

의안번호	제 407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9월 일 (제 283 회)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9년 9월 2일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7
----------	-----

제출연월일 : 2009. 9. 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8989호, 2008.3.28,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용어 및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행정처분의 종류를 법에 따른 용어로 개정함(안 제9조)
  - (1) 학원(교습소)의 경우에는 휴원, 폐원을 교습정지, 등록말소(폐지)로 하며,
  - (2)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중지로 함
- 나. 인용 조문을 개정함
  - (1)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로 함(안 제2조의3, 제2조의4)
  - (2)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함(안 제9조의2)
-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이 조례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으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각각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보험가입"을 "보험"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각각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를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0.8인"을 "0.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의4 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의3제5호 내지 제6호의"를 "제2조의3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

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조의5 제1항 중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을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라"로, "1인"을 "1명"으로 각각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1인"을 "1명"으로 각각 한다.

제2조의6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소속 하에"를 "소속으로"로 각각 한다.

제3조와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2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중 피아노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00까지로 하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의5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0일이내에"를 "10일 이내에"로 각각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강료 등 금액통보)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영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전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절차, 기타"를 "절차 및 그 밖"으로 각각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개인과의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중지)**, 등록말소(**교습소의 경우에는 폐지**)로 하되,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중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조의2 제1항과 제2항, 제2조의4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조의5 제1항과 제2항, 제2조의6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각각 항 번호와 본문을 띄어 쓴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89호, 2008.3.28, 공포·시행]

제8조 (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 (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1. ~ 3. (생략)

[전문개정 2007.12.2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타법개정]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②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li> <li>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li> </ol> <p>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p>	<p>제2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li> <li>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li> </ol> <p>②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그 밖에 목적을 이유로 학습</p>

현행	개정안
<p>로 학습자에게 차별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제2조의2(학원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p> <p>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p> <p>4. 화장실·급수시설</p> <p>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p>	<p>자에게 차별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제2조의2(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1. 강의실 또는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p> <p>2.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있어서는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p> <p>4. 화장실·급수시설</p> <p>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p>



현 행	개 정 안
<p>6. <u>기타</u>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p> <p>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당·회의실·사무실</li> <li>2. 학습자료실·도서실</li> <li>3. 상담실</li> <li>4. 컴퓨터실</li> <li>5. 방송·통신시설</li> <li>6. 체육시설·오락시설 <u>기타</u> 편의시설</li> <li>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li> </ol> <p>제2조의3(단위시설의 기준) <b>법 제 80제1항의 규정에 의한</b>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li> <li>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li> </ol>	<p>6. <u>그 밖에</u>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p> <p>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당·회의실·사무실</li> <li>2. 학습자료실·도서실</li> <li>3. 상담실</li> <li>4. 컴퓨터실</li> <li>5. 방송·통신시설</li> <li>6. 체육시설·오락시설 <u>그 밖의</u> 편의시설</li> <li>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li> </ol> <p>제2조의3(단위시설의 기준) <b>법 제 80에 따른</b>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li> <li>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li> </ol>

현 행	개 정 안
<p>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제2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u>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p>	<p>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3. 실험·실습실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5.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제2조의4(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b>법 제8조에 따른</b>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③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p> <p>④ 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제2조의3제5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p> <p>⑤ 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 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p>	<p>③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설비 및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p> <p>④ 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제2조의3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p> <p>⑤ 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 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p>
<p>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p> <p>②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p>	<p>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p> <p>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p>

현행	개정안
<p>담당 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li> <li>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li> <li>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li> <li>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li> <li>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li> <li>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li> </ol>	<p>인력의 배치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숙박시설의 위치는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li> <li>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li> <li>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li> <li>4. 숙박시설에는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li> <li>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li> <li>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li> <li>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li> </ol>

현행	개정안
<p>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u>1인</u>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p> <p>제2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교육감은 제2조의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찰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①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2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p>	<p>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u>1명</u>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p> <p>제2조의6(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교육감은 제2조의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찰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 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등록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2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다만,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하되, 자동차 교습과정중 중기운전의 운전실습장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p>

현행	개정안
<p>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중 피아노실습실은 3 제공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p> <p>②삭제</p> <p>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 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 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 는 경우에는 24:00까지로 하며 독서실은 24 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p> <p>②삭제</p> <p>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 ①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2 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영양사 및 생활 지도담당인력을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통보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수강료 등 금액통보) ①학원의 설립·운영 자 및 교습자는 영 제7조</p>	<p>하, 음악교습과정중 피아노실습실은 3 제공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p> <p>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 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 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 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 는 24:00까지로 하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 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p> <p>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통보)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2 조의5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 인력을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채용 통보된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인력을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 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수강료 등 금액통보)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영 제7조제</p>

현행	개정안
<p>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전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p> <p>②삭제</p> <p>제9조(행정처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 명령, 휴원, 폐원으로 하되 휴원 및 시정 명령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li> <li>2.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li> <li>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li> </ol> <p>제9조의2(교습의 중지 명령등)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의 중지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 전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p> <p>제9조(행정처분)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에는 교습중지), 등록말소(교습소의 경우에는 폐지)로 하되,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li> <li>2.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li> <li>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li> </ol> <p>제9조의2(교습의 중지 명령등)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습의 중지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등기우편 등 당사자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